

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사업”을 “다음 각 목의 사업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친환경선박연료공급업: 「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용 연료(이하 “친환경선박연료”라 한다)를 공급하는 사업

나. 일반선박연료공급업: 친환경선박연료 외의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

별표 6의 등록기준 제2호1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) 연료공급 선 (연료공급 부선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	
---	--

별표 6에 등록기준 제2호가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) 친환경 선박연료공 급선	선급으로부터 ‘선박연료공급선’으로 선박부 호를 부여 받은 선박
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별표 6에 등록기준 제2호나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) 일반 선 박연료공급	총톤수 100톤 이상	총톤수 30톤 이상	총톤수 10톤 이상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

선
별표 6 비고 제5호의2 중 “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공급선”을 “친환경
선박연료공급선”으로 하고, 같은 비고 제5호의3을 제5호의4로 하며, 같은 비
고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3.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 중 친환경선박연료공급선 기준의 경우,

「해운법」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선박은 해양수산부장관
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존 선박연료공급업자의 변경등록 등)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
에 따라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제2조제3호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
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까지 관리청에 일반선박연료공급업 또는 친
환경선박연료공급업의 세분류를 정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
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세분류에 대한 변경등록을 수리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, 관리청은 시정명령,
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) 「항만운송사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2. (생략) 3. 선박연료공급업: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<u>사업</u>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3의2. 4. (생략)	제2조(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<u>다음 각 목의 사업</u> <u>가. 친환경선박연료공급업:</u> <u>「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용 연료(이하 “친환경선박연료”라 한다)를 공급하는 사업</u> <u>나. 일반선박연료공급업: 친환경선박연료 외의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</u> 3의2. 4. (현행과 같음)